제 3 조

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게 통보한다. 이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이상의 증거로서,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0년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일본어 및 한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.

일본국 정부를 위하여　　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前 原 誠 司　　김 성 환

부속서

1. 조선왕조의궤

	서명	편저자	간사(刊寫)연도	권수
1	(哲宗大王)祔廟都監儀軌	儀軌庁	清 同治五写 (朝鮮)	1
2	(哲宗大王)殯殿魂殿都監儀軌	儀軌庁	清 同治四写 (朝鮮)	3
3	(哲宗大王)國葬都監儀軌	儀軌庁	清 同治四写 (朝鮮)	4
4	睿陵山陵都監儀軌	儀軌庁	清 同治三写 (朝鮮)	2
5	(哲仁王后)睿陵山陵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六写 (朝鮮)	2
6	(哲仁王后)祔廟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七写 (朝鮮)	1
7	(哲仁王后)國葬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六写 (朝鮮)	4
8	(哲仁王后)殯殿魂殿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六写 (朝鮮)	3
9	王世子嘉禮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一〇写 (朝鮮)	2
10	王世子冊禮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元写 (朝鮮)	1
11	嘉禮都監儀軌	儀軌庁	清 同治五写 (朝鮮)	2
12	皇太子嘉禮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一一写	2
13	(神貞王后)國葬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一八写 (朝鮮)	4
14	綏陵山陵都監儀軌(神貞王后)	儀軌庁	清 光緒一八写 (朝鮮)	2
15	綏陵陵上莎草改修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四写	1
16	(神貞王后)殯殿魂殿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一八写 (朝鮮)	3
17	(神貞王后)祔廟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一八写 (朝鮮)	1
18	(明成皇后)國葬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二写	4
19	(明成皇后)洪陵山陵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二写	2
20	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七写	1
21	(明成皇后)殯殿魂殿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二写	3
22	影幀摹写都監補完儀軌	儀軌庁	韓 光武四写	1
23	影幀摹写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五写	1
24	影幀摹写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四写	1
25	國朝宝鑑監印所儀軌	儀軌庁	韓 隆熙三写	1
26	宝印所都監儀軌	儀軌庁	清 光緒四写 (朝鮮)	1
27	增建都監儀軌(景福宮璿源殿 昌徳宮璿源殿)	儀軌庁	韓 光武五写	1
28	璿源譜略修正儀軌	儀軌庁	韓 光武八写	1
29	璿源譜略修正儀軌	儀軌庁	韓 光武一一写	1
30	日記庁儀軌	日記庁儀軌庁	清 光緒一六写 (朝鮮)	1
31	元子阿只氏藏胎儀軌	儀軌庁	清 同治一三写 (朝鮮)	1
32	裕康園園所都監儀軌	儀軌庁	韓 光武九写	2
33	(純明妃)殯殿魂殿都監都庁儀軌	儀軌庁	韓 光武九写	5